



쾌적한 환경

몇 일전에 예방의학교실의 K교수 방에서 귀한 拓本 한장을 구경하였는데 이는 일찌기 癸丑年 4月에 江華에 세웠다는 비석의 탁본이었다. K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비석이 강화의 옛 高麗宮趾에 세워졌던 것을 江華郡에서 지금은 다른 史蹟碑들과 함께 한곳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고 하며 얼마전에 K교수가 그곳에 들렸을 때 우연히 이 비석을 발견하고 흥미를 느껴서 얻어 온 탁본이라고 했다. 화선지 전지 한장에 탁본된 글귀에서 禁標라고 음각된 것을 볼 때 그 어떤 禁止事項을 표시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글귀의 내용이 「放牲畜者杖一百棄灰者杖八十」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는 우리나라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公害防止를 위한 관심이 있었음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禁標에서 牲은 짐승을 뜻하며 畜은 六畜 즉 집에서 기르는 소와 말, 돼지, 양, 닭 개등을 일컫는 말이니 함부로 가축과 집안의 짐승들을 놓아 기르는 者는 棍杖一百刑으로 다스리며 또한 불에 타고 남은 채를 함부로 밖에 버리는 자는 그보다는 가볍지만 역시 棍杖八十形으로 처벌한다는 아주 무서운 경구임을 알 수가 있다.

癸丑年이라면 西紀로 따져서 가깝게는 1913년과 1853년이거나 그보다 멀리는 1793년이나 1733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고증은 다른 史家나 穩學들이 밝혀 줄 것으로 믿고 다만 이렇게까지 약 250년전의 옛날로도 생각키워지는 이유로서는 18세기 말엽에 朴齊家(1750--1805)가 지은 北學議에서 같은 내용의 글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右副承旨인 朴坪의 庶子로 서울에서 태어 난 朴齊家는 庶出이면서도 奎章閣檢書館으로 出仕하여 外職인 扶餘縣監으로 부임하는 한편 春塘台武科別試에서는 壮元으로 뽑혀서 五衛將에 임명되었고 후일에는 永平縣令으로 부임하기까지 했던 이름있는 실학자요 문장가이기도 했다. 한때는 무고하게 辛酉邪獄에 연류되어서 鏡成府로 유배된 적도 있었으나 그는 1778년과 1790년, 1801년 등 세차례에 걸쳐서 清나라 燕京에 자신의 수행원으로 다녀 온 적이 있다.

이와같이 그는 3 차례에 걸쳐서 연경을 왕래하는 동안 그곳에서 자세히 보고 적은 문물, 제도, 풍속, 습관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청나라의 선진적인 물질문화를 받아 들여서 상공업을 장려하고 北學의 정신으로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778년에 그가 저술한 것이 바로 北學議인데, 이 가운데서 進北學議篇에 적힌 거름오칙(糞五則)을 보면, 중국에서는 거름을 금같이 아끼며 채를 길에 버리는 법이 없고 말이 지나가면 삼태기로 똥을 거두어 거름으로 써서 농사에서 더 많은 수확을 하더라고 썼으며, 또한 중국의 사상가인 莊周도 腐臭化新奇者라 해서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신기한 것으로 변화한다고도 쓴 바 있다.

이렇듯 六畜의 糞尿가 좋은 거름이 될진대 이를 거두지 아니하거나 채를 길거리에 마구 버리면 이것이 바람에 불려서 눈을 뜰 수가 없고 또한 이리저리 멀리까지 흘날려

보존의 교훈



金基鈴
〈延世医大教授〉

서 万戶의 酒食을 불결하게 한다고 가르쳐서 폐물이용과 공해방지 및 위생관념 고취에 까지 힘 쓴 혼적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밖에도 商君之酷으로 알려지고 있는 秦나라 法에서도 채를 버리는 자는 死刑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성경에서 고린도後書 11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四十에 하나 滅한 매를 다섯번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로마時代의 매와 우리의 棍杖이 서로 같은 것은 아니겠으나 어떻든 건강한 사람도 매를 사십대나 맞으면 필경은 죽을 것인즉 서른아홉대씩 죽기 직전까지 몇차례로 나누어서 매질한 것이 아니었나 짐작되며, 이렇게 생각할 때 江華禁標에서의 杖一百이나 杖八十의 참뜻은 분명히 商君之酷에서 규정했던 棉灰者死의 형벌보다도 가혹한 형벌이라 할 것인즉 함부로 가축이나 짐승을 밖에 서 놓아 기르거나 채를 버리는 자는 극형으로 死刑에 처한다는 경고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江華禁標의 내용을 재삼 음미해 볼 때 이것이 한편으로는 공해방지와 농사에 힘쓰라는 좋은 교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어느 때 어느 江華府使가 세운 비석식금표였는지는 나로서 정확히 말할바 못 되지만, 적어도 이와같은 禁標를 둘에 새겨서 비석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 세울 정도였다면 분명히 당시의 강화부사는 무척이나 도의교육에까지 힘을 기우렸던 名府使였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이토록 강화금표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값진 유물의 하나로서 아마도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과 공해방지를 先覺한 鼻祖의인 褥魯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되며,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본다해도 가히 당시의 문화민인 강화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고도문명사회속에서 지금까지는 쾌적했던 우리의 주거환경이 쉽게 오염되기 쉬운 터에 江華禁標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산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싶으며, 이는 또한 상대적인 면에서 생물공존원칙을 보존하려는 에코시스템의 생태를 잘 표현한 증거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사람은 사리를 분별하니 말로서 타이를 수 있겠으나 짐승이나 가축을 놓아 기르면 생활주변이 더럽혀 질 뿐아니라 그 밖에도 가축들이 채소류나 곡식까지 뜯어 먹게되니 피해가 클 것이고 또한 이러한 금수를 벌할 수가 없으니 六畜의 주인을 一罰百戒의 교훈으로 삼은 것은 예나 지금이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키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법적조치나 새로운 계획도 좋으나, 그보다는 모든 국민 스스로가 우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각오와 슬기가 더욱 아쉬우며 이런 의미에서 江華의 禁標를 좋은 교훈으로 삼고 싶다.